

송두율 교수 사건

— 경과와 교훈

김세균

지난 7월 21일 송두율 교수 사건 담당 2심 재판부(재판장:김용균 판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판사)의 판결을 뒤엎고 송 교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 종사 부분과 저술활동을 통한 주체사상 선전 부분 등을 무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 교수에 대한 국정원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그가 수구세력에 의해 '해방 이후 최대거물급 간첩'으로 내몰렸고, 많은 사람들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긴 사실에 비춰 본다면, 그리고 그간 법원이 특히 국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항상 보수적 판결을 내린 사실에 비춰 본다면 2심 판결은 그 자체로서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는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송두율 교수 사건의 법적 처리문제는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2심 판결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 교수 사건은 2심 판결로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송두율 교수 사건의 그

간의 경과를 정리해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이 지닌 교훈 등을 구명해 보려고 한다.

송두울 교수의 귀국

주지하다시피, 송두울 교수는 1974년 유신체제의 수립에 반대하여 독일에서 조직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협)의 1대, 2대, 5대, 6대 의장직을 맡으면서부터 한국정부에 의해 '해외반체제인사'로 낙인 찍히고 귀국의 자유를 박탈당해 왔다. 그런 가운데 그는 1973년 북한을 처음 방문한 데 이어 1979년과 1988년에 북한을 재차 방문했고, 1991년에는 김일성 주석을 만날 기회를 가졌으며, 1994년에는 김일성 장례식 등에 해외 한국인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간 6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한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1~5차 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그리고 지난 3월에 열린 제6차 회의는 평양에서 개최되었음)를 주선하거나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10여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행적들로 인해 송 교수에 대한 평판은 국내에서 이중적으로 갈리게 되었는데, 공안당국이나 수구세력들이 그를 북한에 포섭된 거물급 간첩 내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친북인사로 지목해 온 반면 국내의 민주진보세력은 그를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남북한의 화해협력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대표적인 해외민주인사 내지 양심적인 민족지식인으로서 그에게 존경을 보내 왔다.

그런 가운데 송두울 교수는 국내의 학계나 민주민족운동단체들의 초청을 받고 수 차례 고국방문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다. 그러나 공안당국이 그를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반체제인사로 지목해 온 데다가 그가 준법서약서 제출 등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번번이 귀국행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의 많은 민주민족운동단체들은 해외 반체제인사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귀국의 자유를 얻지 못한 인사들에게도 귀국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운동을 전

개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해외 반체제인사
 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귀국의 자유를 얻지 못한 30여 명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유
 귀국'을 허용하면서도 거물급 해외 반체제인사로 분류되어 온 송두율 교
 수, 정경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나고 법적으로 폐지된 상황을 반영하여 '국정원에서의 조
 사 후 자유 부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이 이처럼 '국정
 원에서의 조사 후 자유부여'로 정해지자 송두율 교수의 '조건 없는' 귀국을
 추진해 온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수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송두율
 교수에게 조건 없는 귀국이 보장될 때까지 귀국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했
 다. 이와는 달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측은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자유부여를 위한 불가피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송 교수에게 귀국을 종용했는데, 송 교수가 귀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후 체포영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는 기념사업회의 요청
 을 받아들여 작년 9월 22일 마침내 가족들과 함께 37년 만에 고국방문의 길
 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송 교수가 귀국하기 전까지는 그가
 이전까지 '조건 없는 자유귀국'을 요구해 온 사실에 비춰 보아 이번에도 귀
 국을 최종적으로는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 점에서 송 교수의 귀국은
 처음에는 이들에게도 예상 밖의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가 귀국하기로 결
 정한 이상 그를 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달려가
 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송 교수가 조건 없는 자유귀국이라는 자신의 본래
 의 입장을 철회한 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송 교수가 자신의 기존 입장을 변경해 기념사
 업회의 요청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질문으로 떠오른다.

송 교수가 귀국을 결심한 데에는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의 개혁성 등에 미
 뤄 보아 그가 기념사업회 측의 설득을 일러 있는 것으로 판단, 국정원에서

의 조사가 자신에 대한 구속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국을 떠난 지가 37년이나 흐른 만큼 국정원에서의 조사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고향땅을 밟고 싶은 그의 욕망이 매우 강했던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를 '북한 권력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 이라고 지목한 황장엽을 대상으로 한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송 교수를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 교수에 대한 여론재판

작년 9월 22일 송두울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는 설렘과 고국 방문 후 자유로운 몸으로 독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를 미중 나온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수많은 보도진들의 열띤 취재를 받으며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에 내렸다. 이후 그는 즉각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불구속된 상태에서 국정원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의 조사 이후 대대적으로 불어 닥친 여론재판을 통해 그는 대표적인 해외 민주 인사 내지 양심적인 민족지식인에서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급 간첩' 이자 '말 바꾸기나 하는 부도덕하고 비열한 지식인' 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궁지에 내몰리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가 전개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여론재판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직후인 10월 2일 송두울 교수는 자신의 숙소인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간의 활동에 대한 자성적 성찰' 이라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변호인들에 의하면, 국정원에서의 그의 진술내용은 '자신이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는 주장 등이 담긴 성명서의 수준을 결코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 성명서가 발표되자 국정원이 발표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 내용들이 송 교수 자신이 국정원에서 모두 시인한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송 교수가 자신의 진술내용을 왜

곡·조작한 국정원에서의 조사진술서에 서명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송 교수는 자신이 인정치도 않은 사실들을 담은 조사 진술서에 결국 서명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송 교수에게 철저히 기만적인 회유책을 구사한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귀국하자 자진출두의 조건으로 출퇴근 조사를 허용했다. 또한 국정원 조사가 그를 법정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송 교수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회유 등을 통해 국정원은 송 교수로부터 1973년 처음 북한을 방문할 때 ‘노동당 입당 원서’를 쓴 적이 있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과 같은 뜻밖의 개과를 올렸으며, 막판에는 자신의 진술내용을 왜곡·조작한 조사진술서에 송 교수가 별다른 경계심을 지남이 없이 서명하도록 만드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 마디로 송 교수가 국정원에서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 사태의 진실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정부가 과거에 반체제인사로 몰린 인사들에 대해 포용정책을 취한 점이 도리어 국정원의 그러한 기만적 회유책이 송 교수에게 씨알이 딱히 게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송 교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면 변호사에 의해 송 교수가 왜곡·조작된 조사 진술서에 서명하는 사태는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송 교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 역시 송 교수로 하여금 쉽게 서명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변호사 입회를 허용했다고 대통령과 독일대사관 측에 허위 통보하는 술책을 부렸다.

다른 한편, 송 교수를 대표적인 친북인사 내지 거물급 간첩으로 간주해 온 수구세력은 송 교수가 ‘민주인사’, ‘소신 있는 민족지식인’ 등으로 열렬히 환영받으면서 귀국하게 된 것에 대해 처음부터 커다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만일 국정원 수사가 그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다면 남북대결구조의 유지 등에 커다란 흠집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입

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송 교수가 체포영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한 것을 집권세력이 송 교수에게 사전에 모종의 약속을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종의 '기획입국'의 증거로 내세웠다. 이로 인해 이들은 송 교수가 귀국하자마자 국정원에게 처음부터 '봐 주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되며, 송 교수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송 교수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정원 예산을 대폭 깎겠다고 위협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그런 압박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국정원의 해외담당 공안부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송 교수를 북한의 거물급 간첩으로 인식해 왔으며, 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써 가면서 송 교수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수구세력의 그런 협박이 없다고 할지라도 송 교수가 거물급 간첩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송 교수로부터 왜곡·조작된 조사 진술서에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그간의 주장의 '진실'을 입증하게 되었고, 수구세력으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¹ 이전에 그들에게 쏟아졌던 무수한 비난들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더 높이는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송두윌이 노동당원이라는 사실이 흘러나오자마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송두윌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었던 보수언론들이, 시차에는 일정한 차이를 지니지만 드디어 '송두윌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다. 송 교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역시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형근이 국정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국회정보위에서 공표함과 더불어 송 교수는 일약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급 간첩'으로 추락해

1 예를 들어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은 이를 두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위로부터의 압력을 물리치고 진실을 파헤친 직업수사관들의 위대한 승리'로 평가했다.

야 하는 궁지에 빠지게 된다. 아울러 그가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을 숨긴 것이나,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황장엽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등이 송 교수가 '거짓말이나 하는 부도덕하고 비열한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움직임일 수 없는 증거로서 광범위하게 거론 되기에 이른다.

송두울 교수는 그가 노동당원이었다는 혐의가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이후의 사태 전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사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국정원 측의 요구에 따라 그는 조사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조차 나중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정원이 송 교수에게 어떤 혐의를 씌웠는지를 알게 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이 폭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사태가 조성됨에 이르러 송 교수는 이제 서로 상처되는 두 개의 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 하나는 국정원이 그에게 덮어씌운 피의사실 전체를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이전 행적들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공안당국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고,² 다른 하나는 앞으로 어떤 고초를 겪을지라도 자신에게 몰아 닦친 광풍에 맞서 진실을 밝히며 싸우는 길을 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송두울 교수가 자신이 살아 온 이전의 삶 전체를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한, 전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그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고, 이런 선택은 10월 2일의 기자회견에서 행한 성명서 발표로 나타났다. 후자의 길을 선택하는 한, 그와 같은 성명서 발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발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2 실제로 국정원 역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구속기소가 마땅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반성할 경우 기소유예 조치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보도를 지향하는 언론이라면 적어도 송 교수의 10월 2일 기자회견 이후부터는 최소한 국정원의 주장과 송 교수의 주장 중 어느 한 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보다는 잣밥에 관심을 가진 보수언론 등이 '송두울에 대한 마녀사냥'을 지속시킨 데에 있다. 그들은 송 교수의 성명서 내용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또 한 번의 거짓 변명 내지 말 바꾸기라고 비난했으며, 91년 김일성과의 회담 사진과 94년 김일성 장례식 참석 사진 등 해묵은 사진들을 다시 신문지상에 싣는 등, 송 교수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시기에 행해진 수구 세력의 송 교수에 대한 공격이야말로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격은 송 교수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것에 뒷받침받았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선 다수대중들에게 그가 노동당에 입당한 것,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북한으로부터 높은 대우를 받은 것 등이 불문공직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이적행위로 비춰진 데에 결정적으로 기인한다. 또한 송두울 교수가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나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 점과, 그가 위의 사실들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진술했다고 발표한 것과 성명서에서 발표한 것의 내용이 달라 자꾸 말 바꾸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된 점 등은 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많은 대중들의 등도 돌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그가 출퇴근 조사를 받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이른바 '개혁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수장직을 맡고 있는 국정원이 이전처럼 또 사건을 조작하겠는가라는 국정원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 등이 송두울 교수의 말이 진실이 아닐 것이라는 대중적 믿음을 확산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검찰의 송 교수 조사 이후

송 교수가 기자회견을 행한 다음 날인 10월 3일부터 시작된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은 국정원이 송 교수에게 씌운 핵심적인 혐의사실들을 송 교수가 부인함에 따라 매우 살벌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정원은 송 교수가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말한 반면 검찰은 송 교수가 조사에 극도로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송 교수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9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송 교수 측 변호인단이 요구한 변호인 입회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작년 10월 27일 변호인단은 변호인 입회불허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11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가 검찰의 변호인 입회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로써 헌법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그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민주적 권리의 하나가 송 교수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되살아났는데, 이는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의 하나로 평가될 만한 일이었다.

검찰은 10월 21일 송 교수의 9차례에 걸친 검찰 출두를 통해 주요사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송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다음 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송 교수는 그 날짜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었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행해진 검찰의 송 교수에 대한 조사과정은 한마디로 송 교수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심문시에도 송 교수에게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으며, 기자 브리핑 형식으로 피의사실을 연일 공표했다. 게다가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인정하는 참회 수준의 반성을 하지 않는 한 송 교수를 구속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송 교수에게 허위자백과 전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의 이런 요구를 송 교수가 수용하지 않자 작년 11월 19일 검찰은 마침내 그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른다.

다른 한편, 10월 3일 송 교수가 검찰에 처음 출두한 이후 11월 19일 검찰

이 송 교수를 구속 기소하기까지의 시기는 보수언론, 한나라당, 보수적 지식인 등의 '송두울 죽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송 교수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운동의 첫 물꼬를 튼 것은 10월 5일 학단협, 민교협, 교수노조가 중심이 되어 '송두울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이 대책위가 10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송두울 교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었다. 이후 송 교수 석방 등을 위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은 종교계로, 인권·민중·시민단체 등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이런 운동들에 힘입어 11월 7일 1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송두울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송두울 교수 대책위)가 결성될 수 있었다. 아울러 10월 중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철폐!! 송두울 교수 추방·처벌반대!!' 홈페이지(<http://freesong.jinbo.net>)를 개설한 것,³ 11월 4일 독일에서 교민들이 중심이 되어 '송두울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유럽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reesong.de>)를 결성한 것, 송 교수가 적을 두고 있는 윈스터 대학 동료교수들이 대책위를 결성한 것, 청년학생 그리고 제주도민이 송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를 결성한 것, 미국과 캐나다 교민들이 송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를 결성한 것 등은 송 교수 구출운동의 대중적, 국제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송 교수 구출운동은 확산되어 갔지만, 이것이 송 교수에게 불리한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송 교수의 행위가 친북 이적행위라는 점이 대중의 눈으로 볼 때 자명한 사실처럼 보였다는 점에, 그런 가운데 공안당국-한나라당-보수언론으로 이어지는 3각 편대의 송두울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점 등에 있다고 하겠다.

3 이 홈페이지는 이후 송 교수 대책위 홈페이지로 확대·재편된다.

이런 사태전개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정원의 발표 이후 수구세력이 왜 송 교수에 대해 이처럼 무차별적이고 광기 어린 공격에 나섰는가가 문제된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에는 민주화의 진전,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의 증대, 노무현 정권의 등장 등으로 수구세력의 정치적·사회적 입지는 날로 축소되고 있었다. 그런데 송두울 교수 사건이 터지자 이들은 이 사건이야말로 자신들의 그런 입지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수구세력의 송두울 공격은 송두울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및 남북한의 상호이해와 화해협력을 추구해 온 민주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공격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기획입국설'을 주창하면서 송 교수의 기획입국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일차적으로는 노무현 정권 내의 개혁세력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송두울 교수 사건을 송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진로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닌 문제로서 파악할 때에만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둘째, 송 교수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송두울의 행위와 같은 친북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이로 인해 그간 죽어가는 구시대의 법률로 간주되고 있었던 국보법이 다시 힘을 얻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런 사태에 부딪혀 많은 이들은 송 교수의 행위를 수구세력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해 주고, 국보법이 다시 힘을 얻는 국면을 조성해 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송 교수가 조건 없는 자유귀국을 완벽하게 쟁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했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측면들을 지니지만 수구세력의 공격보다는 송 교수의 처신을 일차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나아가 그런 비판은 우리의 행위를 국보법과 수구세력이 허용하는 자유의 한계 내에 스스로 한정시키는 반면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사고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낸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한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송 교수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송 교수 사건은 그가 국내의 민주진보세력과 의 충분한 교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을 단행함으로써 생겨난 사건 이긴 하지만, 사건화된 이상 무엇보다도 송 교수의 그간의 행위가 우리가 생취해야 할 미래와 관련하여 왜 가치 있는 행위였던가를,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이 왜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를 대중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민주진보세력의 올바른 대응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송두울을 처벌하라' 고 외친 사람들 중 많은 부분은 자신이 남북한 대결구조와 분단체제의 피해자이면서도 남북한 대결구조와 분단체제를 강화하려는 수구세력의 호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만들어낸 상처 입은 영혼의 소지자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분단체제의 극복이야말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입은 상처를 옹게 치유하는 길임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들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보수적 젊은 층의 부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정서적 반공주의자' 라고 부를 수 있는 전자와는 달리 '논리적 반공주의자' 로 규정될 수 있는 이들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체제의 우위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감을 지니고 있는 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송 교수 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수구세력의 새로운 사회적 지지층이 되고 있는 이들 젊은 보수층의 '무반성적인' 반공주의 내지 남한체제 옹호론과 어떻게 대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민주진보세력이 직면한 중요한 당면과제의 하나임이 드러났다.

넷째, 송 교수가 노동당 입당사실 등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그가 이후 자꾸 말 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보수논객들의 좋은 먹이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논객들로 하여금 송 교수에게 강한 불신을

갖도록 만든 소재가 되었다. 송 교수가 노동당 입당 사실이나 김철수 가명 사용 사실을 귀국 전에 밝혔더라면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동당 입당 사실을 자백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어디까지나 송 교수가 국정원의 기만적 회유책에 농락당한 결과, 즉 그런 회유책에 넘어간 한 개인으로서의 그의 나약함의 결과이지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의 거대한 권력과의 대결과정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의 도덕성의 치명적인 흠으로 간주될 사안은 아니다. 나아가 그가 설령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국보법으로 처벌 당해도 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하다. 그러나 진보를 자처해 온 사람들 중에서도 국보법에 의한 송 교수 처벌을 문제 삼기보다는 송 교수의 도덕성 비판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는 일로 생각된다.

다섯째, “송두울 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구속기소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발언과 ‘실정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포용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내용에 비춰볼 때 정권 주도세력은 송 교수를 구속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가 끝내 구속 기소된 것은 법무부장관이 최종 순간에 ‘검찰 자율성의 존중’이라는 명분하에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정권 주도세력이 수구세력의 공세와 악화된 여론에 굴복, 해외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포용 정책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여섯째, 조선일보 등은 송 교수를 법정에 세우면 그에게 형을 살고 난 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그가 독일인 신분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해 그를 법정에 세우기보다는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렇게 주장한 데에는 무엇보다 송 교수를 법정에 세우게 되면 공안당국이 썩은 송 교수의 혐의사실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날

지 모른다는 우려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 교수가 여론재판을 통해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급 간첩'으로 몰린 상태에서 추방되었다고 한다면 송 교수는 그 혐의를 온통 덮어쓴 채 영구히 귀국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국제미아의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을런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추방은 송 교수에게 감옥행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덮어씌워진 혐의를 벗길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최악의 사태 진전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교수는 '강제로 추방당하기보다는 감옥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송두울 교수 사건 대책위 역시 '강제추방 반대'를 자신의 중요한 운동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활동해 왔다.

재판과정

송두울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구속 수감된 직후 '살아서 죽기를 택하기보다는 죽어서 사는 길을 택하겠다'라는 말로써 구속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 말은 허위자백과 사상전향 등을 강요하는 공안당국의 요구에 굴복함이 없이 당당하게 싸우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말이자, 국정원에서의 자신의 처신에 대한 자기반성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했다. 이에 비추어 송 교수에 대한 재판과정이 검찰과 송 교수 및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임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실제로 작년 12월 2일 첫 공판이 열린 제1심 공판은 송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송 교수 측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점철했다. 그간 진행된 공판 및 주요 공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 재판과정〉

제1차 공판(2003. 12. 2) : 송 교수의 모두 진술, 송 교수에 대한 검찰 핵심문

제2차 공판(2003. 12. 16): 변호인단의 반대심문

제3차 공판(2003. 12. 23):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보충심문

- 제4차 공판(2002. 12. 30): 검찰 측 증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및 변호인 측 증인 이삼열 숭실대 철학과 교수와 양정옥 고대환경의학 연구소 연구원의 증언
- 제5차 공판(2004. 1. 6): 변호사 측 증인인 유영구 전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길승흠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라이너 베르닝 독일한국협회회장, 박호성 서강대 교수의 증언 및 검찰 측 증인 오길남의 증언
- 제6차 공판(2004. 1. 27): 제6차 공판은 원래 1월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 증인으로 요청된 황장엽이 증인으로의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날로 연기됨. 변호사 측 증인인 권만학 경희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의 증언 및 검찰 측 증인 최창동 전 부산외대 법대 교수의 비공개 증언
- 제7차 공판(2004. 2. 10): 검찰 측 추가 증인 홍진표 《시대정신》 편집위원의 증언
비공개심리(2004. 2. 13): 황장엽에 대한 비공개 심리
- 제8차 공판:결심공판(2004. 3. 9): 검찰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및 송 교수의 최후진술
제9차 공판:선고공판(2004. 3. 30): 재판부의 선고

〈제2심 재판과정〉

- 제1차 공판(2004. 5. 19): 송 교수의 모두진술과 더불어 송 교수의 검찰 측의 심문, 변호인단의 반대심문 및 재판장의 심문
- 제2차 공판(2004. 6. 2): 변호인 측 증인 김연철 고대 아세아연구소 교수의 증언
- 제3차 공판(2004. 6. 16): 변호인 측 증인 강정인 서강대 교수와 김양현 전남대 교수의 증언
- 제4차 공판:결심공판(2004. 6. 30):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송 교수의 최후진술
제5차 공판:선고공판(2004. 7. 21): 재판부의 선고

송두율 교수 사건 재판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1심 재판과정은 한 마디로 검찰 기소내용의 근거 없음과 송 교수의

혐의 없음을 입증해 주는 과정이었다.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엄격한 물적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국보법을 적용할지라도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의 정신 및 남북한의 상호이해와 화해협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존중해 판결했다면 송 교수가 무죄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는, 송 교수에 대한 핵심적인 혐의사실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결여한 황장엽의 전언 등을 내세웠을 뿐이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보수언론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떠들어댔던 이른바 '김경필 파일'이라는 것도 변조가능성 등의 면에서 증거능력을 결여한 것이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송 교수가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을 지닌 문건이 기도 했다. 반면 유영구 씨는 송 교수가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리고 송 교수가 주선한 남북한 해외학자 학술회의가 남한 학자들의 주도하에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후원으로 개최된 것임을 김승흠 전 서울대 교수와 권만학 교수의 증언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나아가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한 북한관련 저술이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박순성 교수는 내재적 접근법이 한국학계에서도 공인된 북한연구방법론의 하나이자 남한에 북한학다운 북한학을 출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방법론임을, 그리고 학문적 저술을 국보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진정한 강점을 죽이는 행위임을 주장했다. 그 외 양정옥 씨는 오길남의 입북을 권유한 이가 송 교수가 아님을, 이삼열 교수는 송 교수가 초대 회장을 지낸 민건협이 친북반체제단체가 아니라 민주화단체였음을, 라이너 베르닝 씨는 송 교수가 필진

중의 한 사람인 『한국: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책이 한국을 비방하는 책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유럽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쓴 서적임을, 그리고 박호성 교수는 송 교수가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증언했다. 검찰이 송 교수가 저질렀다는 국보법 상의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 역시 학문연구와 학술회의 개최 및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국보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송 교수의 노동당 입당이 북한 방문을 위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고 송 교수가 노동당 당원으로서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금품수수건 역시 간첩활동을 위한 자금수수 등과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점 등도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송 교수의 혐의를 주장하는 검찰의 심문내용은 우리 사회의 소수의 극우반공주의자들이 대변하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몰지성적인 주장 그 자체였다.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북한 타도가 아니라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법정에서 설지 모른다는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검찰이 송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구사한 논리는 대체로 ‘개는 동물이다. 사람도 동물이다. 고로 사람은 개다’와 같은, 합리적 추론을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 ‘악마의 3단논법’과 같은 것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한 루츠는 동독의 간첩이었다. 송두울도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한다. 고로 송두울은 간첩이다”라는 식의 논리였다. 게다가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들이란 한결같이 학문적 식견이 부족하거나 사상적 전향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사람들이었다. 법정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해 운운하면서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김일성, 김정일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김광동 씨의 경우 ‘박정희를 가장 존경한다’는 극우반공 논객이자 학문적 저술에 관한 증인으로 나오기에는 이론적 소양이 천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길남 씨는 독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가

죽과 함께 월북했다가 이후 북한에 가족을 그대로 둔 채 탈북해 현재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최창동 전 부산외대 법대교수는 유럽으로 건너가 친북활동을 하다가 이후 국정원의 공작원이 되어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 북한대사관 파일을 복사해 나온 사람이었으며, 홍진표 씨는 주사파로 활동하다 1990년대 후반 전향한 자로서, 현재는 <강철서신>의 저자로서 주사파의 이론적 대부 역할을 하다가 전향한 김영환 등과 더불어 《시대정신》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황장엽이 주도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황장엽 추종자이다. 게다가 국보법 위반여부 등을 감정하는 안보관련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란 대체로 공안당국에 얽매어 있는 전향자들로서 자신의 이름을 떼뺏히게 드러내지 않은 채 타인의 사상을 검열하는 '어둠의 자식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송 교수의 석방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공판을 방청했다. 극우보수세력들 역시 공판을 방청하도록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재판이 송 교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됨이 드러나면서부터 이들의 기세는 꺾였으며, 동원된 사람들의 수 역시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리고 재판이 진척되면서 수구신문들의 논조 역시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다른 한편, 재판과정 중 국내외의 많은 사회단체나 인사들이 송 교수의 무죄석방 등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하버마스, 쿤터 그라스를 비롯한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송 교수의 석방을 위해 여러 운동들을 전개했다. 아울러 일본거주 지식인 364명이 연명하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제연대를 크게 진척시킨 일로서 평가받을 만하다. 아울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 송두울 교수 사건 대책위가 주최해 지난 2월 12일 '경계에 피는 꽃 - 송두울과 그의 벗들을 주제로 한 번주'라는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 안중근기념사업회가 송 교수를 '안중근평화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해

지난 3월 26일 시상식을 연 것 등은 송 교수 석방운동에 커다란 힘을 부여해 주는 일들이었다.

셋째, 1심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오세현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 인사이며,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사과나 반성 등의 개전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1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남북학술회의 주선 부분 등은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송 교수가 비록 명예직이었지만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저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선전했다는 이유를 들어 송 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검찰 측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남북한 학술회의 부분 등은 무죄로 인정하면서도,⁴ 송 교수를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선先 결정’ 하에 검찰 측 증인과 변호인 측 증인의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검찰 측 증인의 증언내용에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사실관계들을 모두 송 교수의 유죄 입증에 맞도록 짜 맞추는 범죄적 추리소설의 내용과 같은 것이었다.⁵ 그런데 1심 선고가 있자 수구적 보수언론들은 판결이 자신들이 행한 여론재판의 내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관대한 판결이었던 만큼 그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결내용이 자신들의 체면을 살려 준 것으로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통해 송 교수에 대한 주요 혐의내용의 근거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

4 그러므로 판결문은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송 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의 활동내용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직이 명예직에 불과했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북한 노동당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판결하거나, 남북학술회의 주선부분은 무죄를 인정하고서도 저술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그러므로 판결문은 최광동, 홍진표와 같은 증언의 자격을 결여한 자의 증언은 존중하면서 도 유명구, 박순성과 같은 공신력 있는 북한전문학자의 견해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

황 속에서 1심 판결내용은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재판과정을 예의 추적한 독일 언론의 반응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참으로 신랄한 비판을 담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은 송 교수가 법정에서는 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승리한 재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2심 재판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단들은 특히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김연철 교수는 김철수라는 가명의 비공개 정치국 후보위원이란 있을 수 없음을 자신의 오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증언했으며, 내재적 접근법을 비판한 적이 있는 강정인 교수는 자신이 행한 학문적 논쟁을 송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악용한 검찰 측과 1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증언을 행했다. 그리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내외의 많은 단체나 사람들이 성명서 발표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했다. 4월 5일 하버마스, 크리스만스키 교수를 비롯한 독일의 각계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낸 것, 5월 25일 재외 유학생 및 연구자 175명이 송두울 교수 사건에 대한 질의 및 탄원서를 보낸 것, 7월 15일 철학자 259명이 '송두울 교수 무죄석방 및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철학자 259인 성명 및 탄원'을 행한 것 등은 그런 노력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다. 이와는 달리, 검찰 측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 채 자신들의 억지논리를 방어하는 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 교수가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송 교수에게 15년 징역을 구형했다.

그런데 대책위에서는 이전부터 정치국 후보위원직 수행과 같은, 송 교수에 대한 핵심적인 혐의사실이 증거가 부족하고, 송 교수의 학문적 저술을

친북선전물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경우에는 송 교수가 다른 혐의사실들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 고 할지라도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일말의 기대를 1심 재판부는 저버렸었다. 나아가 검찰이 15년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가 7년형을 내린 상황 속에서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일이었다. 그런 만큼 송 교수나 변호인단은 물론 송 교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기대를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2심 재판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2심 재판부는 무죄석방을 요구한 우리의 요구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닌 것이긴 하지만 국보법 관련 판결 사상 가장 진취적이고, 국보법 틀 내에서 판결하면서도 국보법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통해 송 교수는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유인의 몸이 되었고, 피추방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강의를 위해 독일에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은 국내의 민주진보진영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크게 환영받았지만, 검찰과 보수언론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안겨 주는 판결이었다. 그 판결을 접하고 내질렀던 그들의 비명소리는 국보법의 사망이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조종과 같은 것이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들의 다른 목소리는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요인들이 작용해 2심 재판부가 그와 같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는지가 질문으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증거주의 원칙을 지키고 국보법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적용하려는 진취적 자세를 보였다는 점, 송 교수 사건이 국제적 사건이 되어 송 교수의 석방 요구가 날로 가중되었다는 점,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수구세력

의 입지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2심 판결이 있는 후 검찰 측은 “그렇다면 김정일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목 메인 비명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나 그 말은 그들이 김정일의 증언이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채 송 교수를 법정에 세웠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는 말이기도 했다. 실제로 국보법과 관련되는 한 검찰은 혐의만 있으면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는 이른바 ‘정찰제 판결’을 일삼아 온 것이 과거의 역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 교수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송 교수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송 교수 사건이 어떻게 허위조작되었는지가 법정에서 폭로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이 검찰이 송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저지른 최대의 실수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런 점에 비춰 본다면 송 교수를 법정에 세우기보다는 추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런 사태 전개를 내다보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영구히 엄폐하려는 수구세력의 교활한 방책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공안당국과 대부분의 수구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선 것과 같은 선상에서) 송 교수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약화된 정세에 고무되어 국보법의 위력을 되살리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송 교수를 법정에 세우는 과욕을 부렸다. 그러나 그들의 과욕은 국보법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보법 폐기의 절실성을 전 사회적으로 환기시킴과 더불어 국보법 폐지운동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사태를, 나아가 수구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기는커녕 더욱 약화시키는 사태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송 교수 사건은 한국 역사의 기본 흐름이 인권의 신장과 국보법의 폐기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 흐름을 일시적으로는 모르지만 수구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칠지라도 끝내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송 교수 사건은 동시에 송 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나타난 민주진보세력 내부의 혼란과 동요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우리가 단지 공포로 인해 침묵을 지키거나 비겁하게 처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국보법체계가 우리들 자신에게 얼마나 깊숙하게 내면화되어 있는가를 일깨워 주고 자성케 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 교수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 진보와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 교훈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진보세력은 더욱 깨어난 존재로 성숙해질 것이고, 그런 성숙한 힘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인류 진보를 위한 참으로 귀중한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2심 판결에 대해 다수국민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수 국민의 그런 태도는, 그러나 국보법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국보법체계를 내면화해 온 우리들 자신의 서글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이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국보법체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은 궁극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민주와 진보를 가로막은 질곡들을 깨뜨리는 대중적 힘이 분출되어 나올 때에만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이 분출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송 교수 자신도 우리와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

김세균 gimsk@snu.ac.kr |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저서로는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의 다수가 있다.